

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928호, 2020.12.9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 예고

1. 개정 이유

철도시설의 역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역 시설은 침수의 예방과 비상 시 신속한 배수를 목표로 침수방지시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(안 제63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철도시설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
- 전화 : 044-201-4889 / 팩스 : 044-201-5673